

신구조문대비표  
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9360호, 2018. 12. 11., 타법개정]	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9461호, 2018. 12. 31., 일부개정]
<p><b>제13조(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) ①</b>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</p> <p>1. 굴착깊이(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13조(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) ①</b> - - - - -</p> <p>1. 굴착깊이[공사 - - - - - - - - - - 말하며,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(集水井),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]- - - - 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7조(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) ①</b> (생략)</p> <p>②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2. 사업 시행으로 지하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실시계획·시행계획 등(이하 “사업계획 등”이라 한다)의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③ 법 제16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30일(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)을 말한다.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.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기준·방법, 보완 또는 조정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17조(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) ①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</p> <p>③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2. 사업 시행으로 지하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실시계획·시행계획 등(이하 “사업계획 등”이라 한다)의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④ 법 제16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30일(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)을 말한다.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.</p> <p>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</p>

	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기준·방법, 보완 또는 조정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<b>제20조(사업계획등의 변경·재협의) ① (생략)</b>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“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 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 1. 최대 굴착깊이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 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3미터 이상 증가 하는 경우  2. (생략) ③·④ (생략)	<b>제20조(사업계획등의 변경·재협의) ① (현행과 같음)</b> ② - 1. <u>굴착깊이</u> - 2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